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1 추진 개요 및 부과 실적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 ('26.7.31. 기준)
- 부과기간: '25. 8. 1. ~ '26. 7. 31. ※ **납부기간: 2026. 10. 16. ~ 10. 31.**
- 산정기준: 시설물 연면적(㎡)×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연면적 3천㎡ 이하: 350원 / 3천㎡ 초과~3만㎡ 이하: 900원 / 3만㎡ 초과: 1,500원

□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연도	부과액	실제수납액 (수납액-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징수율(%)
2025	2,149,196	2,076,675	72,520	96.63
2024	2,116,819	2,043,555	73,264	96.54
2023	2,035,003	1,965,210	69,793	96.57

□ 미납 시 조치 사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최대 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가능

□ 시설물 미사용 신고

- 신고 기간: '26. 8. 3. ~ 납부고지 받고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수지구청 교통과 방문 제출 또는 팩스 제출
(031-6193-8399 / 팩스 제출 후 수신확인 필수)
- 제출 서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객관적 증빙자료 예시

사유	증빙자료	발급처
휴업	휴·폐업 확인 증명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무서 또는 세무사
미임대	전기세 부과현황 또는 납부내역 관리비 부과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전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실확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한국전력공사 관리소장 직인 필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는 소유자 관리소장 직인 필수 세무서 또는 세무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확인 서류	
주거용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

□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 계산 신청

- 신청 대상: 부과 기간('25. 8. 1. ~ '26. 7. 31.)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기간 내 미신청하면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 신청 기간: 납부고지 받고 10일 이내
- 신청 서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 **분할납부 신청**

- 신청 대상: 부담금이 300만 원 초과하는 납부 대상자
- 신청 기간: 납부고지 받고 5일 이내
- 신청 서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조정신청**

- 신청 대상: 부담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자
- 신청 기간: 납부고지 받고 20일 이내
 - ※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신청 서류: 수지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신청서

☐ **문의 사항: 수지구청 교통과 [031-6193-8392]**